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26. 10. 15.>

[]군복
[]군용장구 제조·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40일

허가번호 제 호 허가일자

신청인	성명(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)
	주소	전화번호
영업소	상호	사업자등록번호
	소재지	전화번호
영업품목 변경사항		
변경사유		

「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·판매업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국방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허가증 2. 사업장별 시설 도면 및 시설설명서(제조·판매업의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3. 신청인(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)의 사진[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(3×4센티미터)을 말합니다] 1장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공장등록증명서(제조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2. 건축물대장 3. 지방세납부확인서(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만으로 한정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"담당공무원 확인사항"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서류검토	→	결 재	→	허가증 작성 및 교부
신청인				처리기관: 각 군 본부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